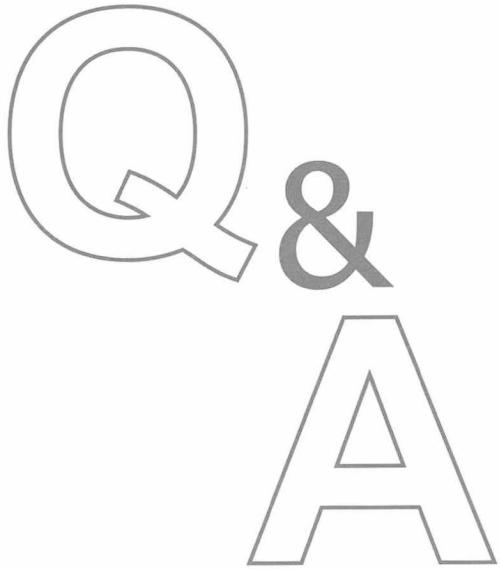


궁금합니다



Question | 제가 근무하는 곳의 지하6층에 설치된 기계실은 면적이 3000m²(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음)이상으로, 관련법규에 따른 방화구획이 셔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용도가 대형병원이다 보니 각종 덕트 및 배관이 너무나도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어, 셔터 상부를 법규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의 2항의 3호)에 맞게 완전 밀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셔터상부의 방화구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혹여 완화규정은 없는지요?

Answer | 상기의 경우, 법규정에 적합하게 셔터 상부가 밀착되도록 방화구획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는' 정도의 판정 및 완화적용은 관할 행정기관(건축과 등)에서 할 수 있으니 해당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제8조 9항의2에서 한쪽 가지배관에 상·하향식 헤드를 설치할 때 말단부터 (말단을 1로시작함) 1번 상향, 2번 상하향, 3번 상하향, 4번상향, 5번상향, 6번상향, 7번상하향, 8번상하향으로 설치할 경우,
- (1) 이러한 형태로 헤드를 설치하는 것이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를 8개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에 맞는 것인지요?
 - (2) 규정에 맞다면 왜 상향식 헤드는 개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요?
 - (3) 가지배관의 관경은 어떻게 되는지요? (1~2번 : 25mm, 2~3번 : , 3~4번 : , 4~5번 : , 5~6번 : , 6~7번 : , 7~8번 : 8번~ 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Answer** | (1) 화재안전기준 제8조 9항의2에 따라 반자 위에 상향식, 반자 아래에 하향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반자 아래는 7개이므로 '8개 이하' 규정에 맞습니다.
- (2) 이유는 초기화재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반자를 경계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 (3) 가지배관의 관경은 병설하는 경우이므로 별표1의 나에 맞게 1번(1개) : 25mm, 2번(3개) : 32mm, 3번(5개) : 40mm, 4번(7개) : 40mm, 5번(9개) : 50mm, 6번(11개) : 50mm, 7번(13개) : 50mm, 8번(15개) : 50mm입니다.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가지배관의 하향식에 대해서만 8개까지로 제한을 두며, 급수에 필요한 구경은 모든 헤드 개수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야 최악의 경우 모든 헤드가 개방 되더라도 충분한 급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 안녕하세요. 방재쪽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입니다. 책을 이리저리 읽다보니 화재위험등급, 화재위험도란 표현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기준이 있는지요?

Answer | 안녕하세요. 먼저 특정대상물에 대해 화재위험을 조사하고 화재위험 산정을 위한 체크요소를 기재하면, 중요도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는 화재위험 계산식에 의해 해당 특정대상물의 화재위험치가 산출됩니다.

화재위험도라 함은 이렇게 산출된 수치를 말하고 화재위험 등급은 화재위험도 수치 범위를 구분하여 상, 중, 하 등의 등급을 정한 것입니다. 화재위험도를 산출하는 방법은 조사 대상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개별 방식에 따라 측정기준 또한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Question |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방재실무교육 중에 '화재폭발조사관 자격' 이란 교육과정이 있던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교육을 받으면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지요? 아울러 노동부 환급과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 화재폭발 조사관 자격과정은 'NFC 921 화재폭발 조사지침'에 대한 각 부문별 내용 해설을 통해 전문

기술능력 배양 및 미국 화재폭발 조사관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단지 교육을 수료했다 하여 화재폭발 조사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상기 과정은 노동부 환급 과정입니다. 시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안내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강화 플라스틱 제조 회사입니다. 협회의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도 ASTM E285의 산소 아세틸렌 삭마시험이 가능한지요. 혹은 플라즈마나 불꽃을 이용해 재료의 관통속도 혹은 배면 온도를 측정하여 재료의 삭마성을 알아보는 유사한 시험을 할 수 있는지요?

Answer | 평소 방재시험연구원을 이용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연구원에서는 문의하신 시험이 불가 하오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STM E 285 산소아세틸렌 삭마 시험을 실시하려면 ASTM E 285 규격에 맞는 시험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시험장치에는 토치, 산소, 아세틸렌, 저장창고, 열류계 등 여러 구성장치가 있는데, ASTM E 258의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는 토치의 경우 VICTOR MODEL 315라는 특정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산소는 미국 연방규정 BB-O-925a, 아세틸렌은 미국 연방규정 BB-A-106a에 맞는 제품을 구해야 하며, 그밖의 시험규격에 나온 시험장치 구성을 일치시켜야 합니다.